

# 2026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배포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책자 및 전자파일(PDF)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모바일 접속경로

» 모바일 그룹웨어 → 게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PC 접속경로

» EP시스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검색

게시			↻	+
전사공지	업무가이드	현장소통	경조사	
🔔	'26년 상반기 WIDE:A Day 시행 안내	전은혜	26.01.29 15:26	
N	'26년 4월 경영실적 안내	임요환	26.05.15 08:15	
N	참고장 선임 안내(잭니클라우스)	장민지	26.05.15 07:58	
	보직변경 안내(포항운영1,2그룹)	이후욱	26.05.12 16:37	
	휴직 안내(용인하수, 김포하수)	장민지	26.05.08 12:35	

1 2 3 >

최근게시물(총1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상세검색 ▾

새로고침

≡ 제목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안내

### I 하도급법

관련부서 : 전 사업장/구매

####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09
- 2. 하도급법의 구조 09
- 3. 관련 규정 10
- 4. 적용 범위 11
- 5. 법 적용 대상 사업자 11
- 6. 법 적용 대상 거래 12
- 7. 법 위반 시 제재 16

#### □ 거래단계별 법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1. 계약체결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 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18
  - 2) 부당한 특약설정 금지 20
  -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24
- 2. 계약이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 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28
  - 2) 부당 반품의 금지 30
  - 3) 검사 및 결과 통보 의무 33
  - 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35
  -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38
  - 6)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44
- 3. 대금지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 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47
  - 2) 선급금 지급 의무 49
  - 3)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51
  - 4)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의무 53
  - 5)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납품단가 연동제) 54
  - 6)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의 공시 56

□ 체크리스트	57
□ Q&A	61

## II 공정거래법

관련부서 : 전 사업장/구매

□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 담합이란	69
2. 규제 현황	69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70
4. 합의 추정 제도	70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71
2.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72
3. 거래 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72
4. 정보 교환 행위	72
5. 입찰 담합	79
6.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제재	83
□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부당한 내부거래 개요	85
2.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87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93
4. 업무 시 유의사항	99
□ Q&A	101

## III 약관법

관련부서 : 분양임대

□ 약관법의 적용범위	
1. 약관법이란	107
2. 약관 규제의 취지	107
3. 약관법상 약관의 정의	107

□ 약관법의 특성	
1.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109
2. 개별약정의 우선	109
3. 약관의 해석	109
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109
□ 불공정한 약관 조항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 원칙	110
2. 면책 조항의 원칙	111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112
4. 계약의 해제·해지	112
5. 채무의 이행	113
6. 고객의 권익보호	114
7. 의사표시의 의지	114
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115

## I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 전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CP의 정의	119
2.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119
□ CP등급평가	
1.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121
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121
□ 포스코와이드 CP 추진 경과	
1. CP추진 경과	122

※ 참고문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발행부서

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사무국

발행일

2026년 5월

---



## 하도급법 핵심 Q&A

###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규모 기준이 뭔가요?

- ▷ 단순히 건설, 제조, 수리, 용역을 위탁하는 것만으로 전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시켰느냐라는 규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 수급사업자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 중소기업
  -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제외)

### 2. 하도급법은 건설, 제조, 수리, 용역 계약에만 해당하면 적용되나요?

- ▷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 하도급거래 : ①원사업자가 ②수급사업자에게 ③업(業)에 따른 ④ 건설, 제조, 수리, 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로 ① ~ ④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 건설업자 : 건설행업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공사업자 등을 포함
- 제조위탁 : 물품의 판매, 제조(가공 포함), 수리,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 **단순히 기성품을 구매(매매)하는 것은 하도급법 대상이 아닙니다.** 주문에 의한 제조 즉, 설계도나 사양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해야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 수리위탁 : 물품의 수리를 업(자가 수리업 포함)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 **차량수리업자가** 주문 받은 차량 수리의 일부를 **다른 차량수리업자에게** 위탁, 제조업자가 자사 공장의 공구 수리를 **스스로 하는 경우** 수리의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
- 용역위탁 : 지식, 정보성과물(S/W개발, 설계, 영상 제작 등)이나 **역무의 공급(운송, 청소, 경비, 유지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 지식, 정보성과물의 정의 : 법에서 정한 내용은 주로 설계, S/W 개발, 영상 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창작물'이나 '기술적 결과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지식, 정보성과물의 구체적 예시
    - 정보프로그램 : S/W개발, 시스템 통합(SI), 앱 제작 등
    - 디자인 : 제품 디자인, 그래픽, 광고 디자인 등
    - 설계 : 건축, 기계, 전기, 전자 설비의 설계 및 도면 작성
    -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프로그램,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 등



## 하도급법 핵심 Q&A

### 3. 경영컨설팅이나 법률자문, 회계자문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나요?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용역위탁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가 업(業)으로 하는 업무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할 때 성립**합니다.

○ **업의 관련성** : **우리회사의 주요 사업 목적이 '법률 서비스 제공'이나 '회계 감사'가 아닌 이상, 회사 운영을 위해 받는 자문은 '단순 서비스 구매'에 해당**합니다.

### 4. 수급사업자 규모에 따른 하도급법 적용에 대해 알려주세요.(우리회사가 원사업자 기준)

▷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 원사업자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스코)이고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

▷ 수급사업자가 일반 중견기업인 경우 : **해당(단, 규모 확인 필요)**

- 원사업자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스코)이고 상대방인 **중견기업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라면 해당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이 적용됨

※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정거래법 및 민법 등을 적용



## 공정거래법 핵심 Q&A

### 1. 공정거래법에서 우리회사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중 부당 내부거래)**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방지를 위해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세우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제재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유출하거나 담합을 유도·방조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강압적인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계약방식 및 내용에 대한 자체검토(내부거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집단 외 비중을 높혀 자생력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한 리스크 해소 방안입니다.

### 2. 부당 내부거래의 유형 및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부당 내부거래(부당 지원) 유형으로는 **자금 및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지원, 부동산 임대차, 통행세, 상당한 규모** 대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 거래 유형별 유의 사항

유형	유의사항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지원객체)의 <b>신용도에 맞는 금리</b> 산정</li> <li>○ 유사한 시기, 규모, 차입기간의 자금을 독립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 시 금리 검토</li> </ul>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b>를 거쳐 거래</li> <li>○ 평가에 사용되는 추정지표의 객관성 검토</li> </ul>
부동산 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조건의 <b>비계열사 간 부동산 임대차</b> 거래를 검토</li> <li>○ 없다면, 용도·위치·구조 등이 <b>유사한 부동산의 거래조건</b> 검토</li> </ul>
통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 단계 계열사의 <b>역할을 정확하게 파악</b></li> <li>○ 중간 단계 계열사에 지급하는 <b>수수료가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b></li> </ul>
상당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 선정 및 거래조건 검토에 필요한 <b>자료를 충분히 수집</b></li> <li>○ 특수관계인과의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b>거래규모가 클 경우 문제될 수 있음</b></li> </ul>

※ 지원객체 : 계열회사 뿐 아니라 비계열회사,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 잠재적 사업자, 완전모자회사 포함



I

# 하도급법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1. |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도급법 제1조)

#### ※ 하도급법의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된다.
- 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2. | 하도급법의 구조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목적 및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li> <li>-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li> <li>-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li> <li>-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b>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의 경우 7년</b>)</li> </ul>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교부, 서류보존 의무</li> <li>-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li> <li>-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li> <li>-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li> <li>-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li> <li>- 선급금 지급 의무</li> <li>-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li> <li>-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li> <li>-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li> </ul>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b>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특약 설정 금지</li> <li>•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li> <li>• 부당반품 금지</li> <li>•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li> <li>•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금지</li> <li>•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li> <li>• 탈법행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li> <li>•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li> <li>• 감액 금지</li> <li>•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li> <li>•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li> <li>• 보복조치 금지</li> </ul>
	<b>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1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li> </ul>	
	<b>수급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2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보존 의무</li> <li>• 신의성실 이행,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li> </ul>	

### 3. | 관련 규정

하도급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행령, 공정위에서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다.

#### (1) 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고시·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특약 고시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고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시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정위 소관 법령 확인]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4. | 적용 범위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 ※ 거래종료일의 의미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의 위탁	건설위탁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한 날	공사 완공일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의미

### 5. | 법 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 (1)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smba.go.kr/>)에서 검색이 가능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2) 원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 원 초과)과 소규모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3,000억 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음

### [업무 시 유의 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 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 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수 있다.
  -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애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 시 억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 6. | 법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 가구제조업과 하도급법

#### (1) 제조위탁

- "제조 위탁"이란 사양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이다. 규격품, 범용품이 아닌 주문품의 위탁이 전형적인 제조위탁이다. 또한 제조 위탁에는 규격품 등을 가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제조 위탁의 주요 유형.

##### ① 판매용 물품의 제조 위탁

- ✓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주택 설비 메이커가 자신이 판매하는 자사 전용의 수전 금구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건재 메이커가 자신이 판매하는 자사 전용의 벽지의 표면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② 수탁 생산용 물품의 제조 위탁

- ✓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서 원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 고객으로부터 제조를 요청받은 건구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주택설비 도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는 특수한 디자인의 욕조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③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 위탁

- ✓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 주택 설비 유지사가 규격품의 배관 부품을 현장에 맞추도록 부품의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2) 무료로 배포하는 카탈로그, 전단지, 브로셔 등의 문안, 레이아웃, 디자인, 인쇄 등

- 무료로 배포하는 카탈로그·전단지·팸플렛 등의 광고물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러한 광고 제작을 스스로 반복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제조 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문안, 레이아웃, 디자인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그 작성을 스스로 반복 계속하고 있을 때,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한다.

### →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 관련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1) 제조위탁의 유형(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① 여기서,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 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 ① 판단기준은 완제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 등을 규격을 지정하여 주문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 ② 예를 들어, 생산업자 등이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 업무 시 유의 사항 ]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 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다.
- 대체물의 경우,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조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위탁과 제조 간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 시장구조, 거래형태, 생산물의 특성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 의존형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경우
  - ✓ 총생산량 대비 납품비율, 생산능력 대비 위탁물량의 규모 등이 일정수준에 달해 원사업자의 위탁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정되고 고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양당사자간 위탁과 제조가 밀접히 연관된 경우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하도급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 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 관련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성과물의 범위 고시

#### (1) 용역 위탁 중 지식·성과물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②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7. 1 법 위반 시 제재

#### (1)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의4, 6)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조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2)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3)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수급사업자의 경우도 서류보존의무 위반시 과징금대상)
  - ※ 법위반행위 당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 전후를 구분
  - \* 과징금 기본산정 기준 : 하도급대금의 2배 X 위반금액의 비율 X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을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지급)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4) 과태료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2)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는 1억 원, 관련 임직원은 1천만 원 이하 부과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억 원, 관련 임직원은 5천만 원 이하 부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5백만 원 이하 부과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행자는 1백만 원 이하 부과

#### (5) 벌칙(하도급법 제30조)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 보복조치 위반시 3억원 이하,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위반시 1억 5천만원 이하
-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인 경우 원칙적 고발
-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0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 (6) 손해배상책임(하도급법 제35조)

-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일부 법위반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3배 손해배상소송 대상 :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보복조치
  - ※ 5배 손해배상소송 대상 : 기술자료 유용(2024.8.28일부터 적용)
- 법원 자료제출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2) 및 비밀유지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3) 도입
  -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 한편,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 준비 서면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함

### (7) 고발

- 원칙적 고발(사업자)
  - ※ 기술유용행위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업체로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 (8) 기타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직전(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 4점
  -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직전(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5점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직전(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10점
  - ※ 과징금 가중 사유: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최대 20% 가중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 거래의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3단계에서 단계별 주요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거래단계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 단가 후려치기(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등)</li> </ul>
계약체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교부, 서류보존 의무</li> <li>부당특약금지</li> <li>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li> </ul>
계약이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특약 설정 금지</li> <li>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li> <li>검사·결과 통지 의무</li> <li>부당반품 금지</li> <li>감액 금지</li> <li>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 금지</li> </ul>
대금지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대금 지급 의무</li> <li>선급금 지급 의무</li> <li>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li> <li>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li> </ul>

1. | 계약체결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1)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하도급법 제3조).

(2) 원칙

- 중요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② 서면 발급 시점

-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법 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 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견적수량과 주문수량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 수량만 적시되어 있고, 단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서면 교부 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 서면을 교부한다.

#### [Don'ts]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업계 표준에 준하지 않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나 전용단말기의 도입은 다수의 발주자와 거래를 하는 수주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합리성이 없는 과도한 도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 협력사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관련 사례

#### <사례1>

####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서면미교부 및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을 이유로 과징금 20백만 원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다.

#### <사례2>

#### [사실관계]

000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다.

### ➔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 (1) 개념(하도급법 제 3조의 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 설정된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개정됨('25년 4월, 법 제 3조의 4 3항 신설)

#### (2)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③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④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⑤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⑥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3) 법 위반 유형

-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이다.

-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한다.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한다.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

### [Do's]

- 기술 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는 전속적 거래에 대한 약정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Don'ts]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관련 사례

#### <사례1>

#### [사실관계]

000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 000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000은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사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였다.

####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2>

#### [사실관계]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각각 공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법인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으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서면 미교부, 부당한 대금 결정 등을 판단하면서 시정명령 및 107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1)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하도급법 제4조)

####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이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본다.

#### (2) 법 위반 유형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동법 제4조 제2항 제3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 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동법 제4조 제2항 제4호)

-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5호)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 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6호)

-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法定) 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7호)

-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경쟁입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먼저,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때의 입찰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실제로 입찰 결과, 실행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사전고지를 하였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낙찰자를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새롭게 단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출용품의 경우, 수출용과 내수용의 제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단가를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품의 경우 관세, 환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견적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업무 시 유의사항]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Do's]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격, 전기 및 가스등의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 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격 결정시 국제적인 가격지표가 있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비용 변동을 반영한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협의한다.

### [Don'ts]

- 구매 담당자가 구매 관련 목표가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내수품과 수출품에 대해 동일한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관련 사례

#### [사실관계]

000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하였다.

\* 2012년 15%, 2013년 0.63%, 2015년 4.9%, 2018년 1월 6.7% 인상하여, 2018년 가공비는 누적 인상율을 반영하면 2008년 대비 29.4% 인상됨

\*\*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1개 수급사업자만이 납품함

####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000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2. | 계약이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 ➔ 부당한 위탁(발주)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 (1) 유형

##### -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②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훼손된 목적물 납품

##### - 부당한 수령거부(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①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3배)의 대상이 된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 ✓ 원사업자는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는 책임으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전보상이나 물량 보전을 하더라도 수령거부(또는 지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 [Do's]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수령 시에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수령증에 검사미완료 사실 및 향후 검사에서 하자 발견 시 조치계획 등을 기재).

### [Don'ts]

- 당사의 보관 장소 부족, 불명확한 위탁내용·검사기준·납기일, 납기단축 통보,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 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의 생산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당초 위탁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4) 관련 사례

#### -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사실관계]

000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 등을 건설 위탁한 후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 000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000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였다.

### ➔ 부당반품의 금지

#### (1) 유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하도급법 제10조)

#####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이다.



#### (2) 반품의 예외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 ①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 ② 오손·훼손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3) 법 위반 유형

-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①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
  - ✓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

- ①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한 반품

- ①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 하자에 대한 책임

- ①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상이 된다.
- 반품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 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 전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로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업무 시 유의사항]

- 해당 목적물의 납기일 이후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다만, 납품된 해당 목적물의 품질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납품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Do's]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Don'ts]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관련 사례

###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조 위탁(2018년 8월)한 마스크팩 실크 원단 30만장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사실관계]

□□□ 및 △△△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 수령하였으나, 3.9백만 원 상당의 위탁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였다

###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 대금 합계 1.8백만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년 12월 30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 (1) 원칙

##### -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①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 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9조 제1항).
- ②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① 통지기간

-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동법 제9조 제2항).

###### ② 통지의무의 예외

-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 예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 검사비용문제

- ①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①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 ①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품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 (3) 법 위반 유형(검사의무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다.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여야 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통지는 법 위반이다.

#### [Do's]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시켜야 한다.
-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와 함께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Don'ts]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는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관련 사례

#### <사례1>

##### [사실관계]

2017년 5월 15일, 수급사업자 000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 위탁한 후 동년 9월 8일, 수급사업자 000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2>

#####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00전자 인테리어 부분공사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검사를 완료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심인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 (1)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지된다 (하도급법 제11조).
-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 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 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 (2)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유무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 (3) 법 위반 유형

- 소급단가 적용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이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이다.

-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①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다.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A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①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즉,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 ①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이다.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①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 감액으로 본다.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①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감액사유와 기준
- ②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③ 감액금액
- ④ 공제 등 감액방법
- ⑤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 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 [Don'ts]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화된 새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된다.

### (5) 관련 사례

####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제품 이상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여 하도급대금 15백만 원을 감액하였다.

- 페널티 부과에 구체적인 내역, 즉 불량품의 개수와 내용,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하자 발생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설명하거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또한,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36백만 원을 감액하였다.
-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 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을 하였다.

####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11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 금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으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 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에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여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대금 미지급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 (1)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③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④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함

#### <경제적 유용성과 기술성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상고기각, 판결확정)>

- **경제적 유용성**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성** : 각각의 기술 내용 자체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이 아니지만, 라우팅 도면을 기초로 회로도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부품에 적용되는 기술표준을 찾아내 반영하는 등으로 위 각 기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해 내는 것에는 수급사업자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제조 방법이 기술적으로 최적의 방법임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작되어 장기간 오류 없이 작동해 온 부품의 제조 방법이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3자가 이 사건 하네스 도면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또는 관련 기술·노하우의 습득이 가능해지거나 이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도면의 유용성은 하나의 서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집약하면서도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에 의하여 증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원고의 회로도와 라우팅 도면 등의 내용을 하나의 하네스 도면으로 구성한 것과 같은 변경 내지 추가를 한 것은 앞서 본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된 사항들에 더해져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기여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③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④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⑤ 발주자의 승인, 품목 등록, 구매조건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주자와의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유의할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할 때에도,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제공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동법 제12조의3 제2항)

### (3)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의3 제3항)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②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③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 ④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 (4) 기술자료 유용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동법 제12조의3 제4항)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 <공정성 침해 여부 판단>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 ②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동법 동조 제2항).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동조 제1항, 제2항).

### (6) 법 위반 유형

-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④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 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요구 목적
  - ③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④ 권리귀속관계
  - ⑤ 기술자료의 대가
  - ⑥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⑦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공동기술개발약정 체결 후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 계약 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 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의 기술전수 또는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전수 또는 경영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유용>

-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

### [Don'ts]

####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유용>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Don'ts]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 (5) 관련 사례

<ㅇㅇㅇ 및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0기감0730, 의결2022-083> - 기술유용

#### <사례1>

#### [사실관계]

피심인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독일회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독일회사에 자신의 고객사에 납품할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여 독일회사의 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금형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0. 9. 16. 맨드릴 납품을 시작으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에 관한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 ① 피심인은 피심인의 중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중 '맨드릴의 설계도면'을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은 동 도면을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신고인과 민관공동투자 개발사업 공동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작성을 위해 신고인에게 맨드릴 제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를 전화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금형개발 연구노트'를 제공하였으나, 피심인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② 피심인은 협력사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성과로 발표하기에 앞서, 신고인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 이메일로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조공정별 사진을 제공하였다. ③ 그런데 피심인은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면서 신고인이 제공한 맨드릴 제조방법을 특허 청구항으로 사용하고, 제조공정 사진과 도면 중 절개도를 각각 특허 도면으로 사용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 ① 피심인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수입한 독일회사의 기술로 금형 및 도면을 신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레이저 커팅은 금형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기술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설사 독일회사의 제조방법에서 착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인은 자신의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그 제조방법을 구체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심인이 금형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완제품을 다시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해당 도면을 작성하였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도면은 신고인의 기술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심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성과공유회에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국산화 건'을 성과로 소개하면서 '레이저 가공을 통해 절곡한다는 부분'을 성과로 소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② 또한 맨드릴 거래는 2010. 12. 31. 납품한 이후 2012. 3. 27. 위탁하기 전까지 후속거래가 없었는데 최초 납품한지 약 8개월이 지난 2011. 8. 9.에 이르러서 품질 검증을 위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품질 검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전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났으며, 중국 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는 제조 등의 위탁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피심인은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을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심인은 도면 요구행위를 제외한 하도급거래는 맨드릴 거래로 한정되고, 2012. 3. 31.에 목적물을 납품함으로써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조사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위탁 품목이 없거나 위탁한 품목이 아닌 별개 품목에 대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양태를 고려하면 법 제23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의 거래 단위는 '기술'을 기준으로 관련 하도급거래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마지막 거래의 입고일이(2016. 12. 14.)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2015. 4. 18.) 이후인 점을 이유로 조사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와 1,38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 △ △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8제하0226, 의결2020-330 > - 기술유용

#### <사례2>

#### [사실관계]

피심인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한 승인도 총 20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구매사양서(Purchase Order Specification, 이하 'POS'라고 한다.)의 내용을 종합할 때 승인도는 거래개시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위탁 계약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되었고 승인도 제공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전체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목적물은 '배전반 패널' 또는 '부스 덕트'이며 승인도는 이 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목적물 제조를 위해 이용되는 사양 서류에 불과하고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 또는 그 부속 서류 등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피심인은 설계 및 제작의 수준이 실제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여부 확인,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다른 전력제어 기기와의 물리적 정합성 검토 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기재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사례3>

#### [사실관계]

000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게 제공하였다.

#### [공정위 판단]

000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여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000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과징금 2.5억 원,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하였다.

### ➔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 (1)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하도급법 제18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2)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 (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사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Don'ts]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 하고 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관련 사례

#### <사례1>

#### [사실관계]

(000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협력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 '협력사 KPI 평가지침'을 제정한 이후로 매년 협력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토대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혹은 페널티(계약해지, 물량축소 등) 부과와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에 명시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피심인은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보유한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임자의 직책에 부임하였고, 협력사의 임원 전직이나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 [공정위 판단]

임원의 임기, 처우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특히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은 사업자가 자신의 손익, 투자 여부 등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인 점, 지분구조는 의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간섭할 이유는 없다. 특히,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다음 후임자를 내정하여 임원의 선·해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 등 피심인과 협력사간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피심인의 인사적체 해소 및 퇴직자의 편의 제공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력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하였다.

#### <사례2>

#### [사실관계]

□□□는 △△△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 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들은 □□□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는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되며, □□□가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3. | 대금지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1) 개념

- 원칙

- ①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②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된다.  
✓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①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2)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 (3) 지연이자 지급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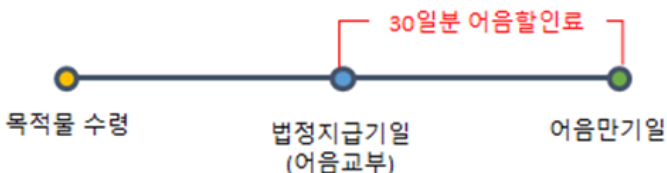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4)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6)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7) 법 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 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 [Do's]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Don'ts]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안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5) 관련 사례

####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하였다.

\* 금형 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본 사건에서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2017. 3. 13.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백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 ➔ 선급금 지급 의무

####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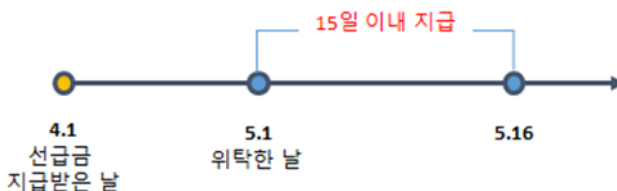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고 한다.

#### (2)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하도급법 제6조 제1항)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3) 지급 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4) 준수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존재한다.

#### ① 현금결제비율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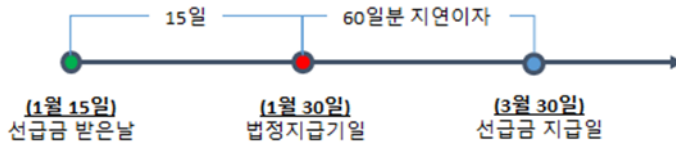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② 어음만기일유지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한다.



### (5) 법 위반 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업무 시 유의사항]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부당한 특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Don'ts]

-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5) 관련 사례

#### [사실관계]

2016년 4월 11일 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중군)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 2, 2-1구간 잔여공사' 등 1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16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공정위의 판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000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1) 조정절차

- 조정내역 통지
  - ①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 변경계약 체결
  - ①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 조정금액 지급

- ①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4항)

### (2) 조정기준

#### -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①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 -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①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 총액지급 방식

- ①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 (3) 조정방법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한다.

### (4) 법 위반 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 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Don'ts]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5) 관련 사례

#### [사실관계]

2017년 8월 22일, '00담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000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

- 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 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 [공정위의 판단]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1~737일 지연하여 체결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선급금 미지급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7.35억 원을 부과).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의무

#### (1) 수급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6조의2 제7항).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Do's]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으며,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 [Don'ts]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납품단가연동제)

### (1) 개념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8항).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면에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제3조 제2항 제3호).
- 연동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 ① 주요 원자재에 해당시 연동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주요 원자재에 해당하지만 연동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한다.
  - ③ 주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 비교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점	사전(계약체결시)	사후(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 (2) 주요 원자재, 주요 에너지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 2조)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 노무비(인건비), 경비(운반비 등)는 연동제 대상이 아니다.
- 유상 사급 자재비의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해당 원재료를 구입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비용)을 의미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3) 기준지표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기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을 지표로 정할 수 있다.

### (4) 예외와 미연동 합의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아래 경우와는 달리 미연동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는 표준 미연동계약을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5) 법 위반행위 제재

- 탈법행위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기타 법위반행위
  - ①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최대 2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으로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 등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 [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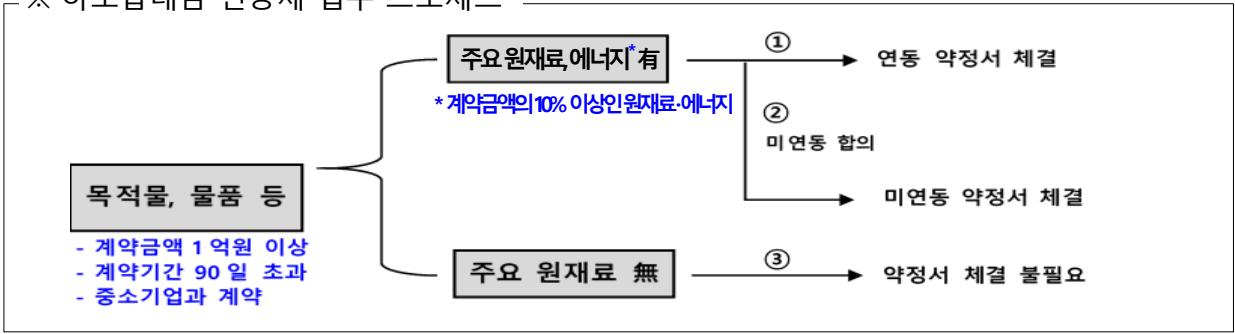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연동계약서 작성시
  - ①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 요건,
  -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⑧ 조정주기 및 ⑨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Don'ts]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 유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업무 프로세스



###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의 공시

#### (1) 개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3)
- ① 하도급법 상 공시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②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로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을 위탁하는 거래(원도급거래)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 (2) 공시해야 하는 정보

-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①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한다.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으로 구분하여 만기를 고려하여 기재한다.
  - ② 지급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기재한다.
-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①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한다.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하면 된다/
  - ②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선금 및 기성금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분쟁조정기구 (매 반기 종료일 기준)
  - ①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분쟁 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 ②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신청 절차, 방법 및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방법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 (3) 공시 빈도 및 공시 시기

-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 ① 상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8월 14일까지, 하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2월 14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단,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03 체크리스트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하도급법 제2조 (정의)	협력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가?</li> <li>•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li> <li>•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li> </ul>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li> <li>•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li> <li>•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 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li> <li>• 경쟁입찰로 선정 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li> <li>•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li> <li>•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li> <li>•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li> <li>•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li> </ul>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발주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li> <li>• 계약서 없이 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는가?</li> <li>• 계약서 및 발주서 없이 물품제조 및 입고요청을 하지는 않았는가?</li> <li>•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는가?</li> <li>• 계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li> <li>•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대금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절차 등)</li> <li>•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li> <li>•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li> </ul>
	서면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관련 서류(검수, 반품, 대금지급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li> </ul>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특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li> <li>•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li> <li>•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li> <li>•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li> <li>•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li> <li>•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li> <li>•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li> <li>•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li> <li>•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li> <li>•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li> </ul>

### 03 체크리스트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p><b>하도급법 제4조</b>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p>	<p><b>대금 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li>•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li> <li>•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li> <li>•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li> <li>•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li> <li>• 수출, 할인특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li> <li>•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li> <li>•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 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li> <li>•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li> <li>• 수의 계약 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li> </ul>
<p><b>하도급법 제8조</b>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p>	<p><b>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li> <li>•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li> <li>• 당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PO에 기재된 Lead Time)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는가?</li> <li>•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li> <li>•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였는가?</li> <li>•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한 적이 있는가?</li> <li>•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에서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는가?</li> <li>•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li> </ul>
<p><b>하도급법 제10조</b> (부당반품의 금지)</p>	<p><b>부당반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li> <li>•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li> <li>•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li> <li>•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li> </ul>

### 03 체크리스트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p><b>하도급법 제9조</b> (검사의 기준·방법·시기)</p>	<p><b>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나가기 전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li> <li>•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li> <li>•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li> <li>•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 처리하였는가?</li> <li>•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li> <li>•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li> <li>•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였는가?</li> <li>• 수출할 물품제작을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li> <li>• 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li> <li>•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였는가?</li> </ul>
<p><b>하도급법 11조</b> (감액금지)</p>	<p><b>하도급대금 감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li> <li>•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li> <li>•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였는가?</li> <li>•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인하였는가?</li> <li>•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li> <li>•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li> <li>•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켰는가?</li> <li>•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는가?</li> <li>•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시유와 기준을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li> <li>•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였는가?</li> <li>•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li> </ul>
<p><b>하도급법 제13조</b>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p><b>대금 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li> <li>•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권과 별개로 일정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고 있는가?</li> <li>• 입고하여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가?</li> <li>•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 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 처리하였는가?</li> <li>• 대금지급 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li> </ul>

### 03 체크리스트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p><b>하도급법 제16조의2</b>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b>하도급대금의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li> <li>•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 시 10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li> <li>• 30일 이내에 협의를 이루어졌는가?</li> </ul>
<p><b>하도급법 제12조의 3</b>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p>	<p><b>기술자료 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li> <li>•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li> <li>•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li> <li>•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li> <li>•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li> <li>•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li> </ul>
	<p><b>기술자료 유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li> <li>•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사나 계열회사에 제공하였는가?</li> <li>•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였는가?</li> </ul>
<p><b>하도급법 제12조</b>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p>	<p><b>사급자재 및 장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가?</li> <li>• 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 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였는가?</li> </ul>
<p><b>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 동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b></p>	<p><b>경영간섭 및 보복 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li> <li>•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였는가?</li> <li>•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하였는가?</li> <li>•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는가?</li> <li>•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li> <li>•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li> <li>•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li> </ul>

## 04 Q&A

**Q. 기본 계약서를 교부하고, 개별 발주는 VAN(전산망)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A.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기본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 발주 내용을 EDI, VAN, ERP 등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하는 경우, 그 발주 내용(품명, 수량, 단가, 납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확인 가능하다면 하도급법상 적법한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전자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Q. 거래 당사자 간 단가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습니까?**

**A. 네, 전적으로 원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작업 착수 전에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된다는 이유로 서면 없이 계속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서면 지연 교부(또는 미교부)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상 지연 자체는 원사업자의 위법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Q. 사전에 구체적인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 어려워 '대금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려 합니다.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까?**

- A.** 시제품 제조 등 대금 확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산정방식 기재가 허용되며, 다음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산정방법은 산식이나 기준이 명확하여, 추후 구체적인 금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여지 차단)
  -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예: 단가 총괄표)과 개별 발주서면이 분리되어 있다면, 두 서면 간 **연관성과 적용 관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③ 무엇보다 금액이 확정되면 **늦어도 최초 대금 지급 시기 전까지** 구체적인 확정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Q. 단가 변경(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A. 단가인하 합의일 이전 발주분에 대해 신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에 해당하여 절대 금지됩니다.** 양 당사자가 소급 적용하기로 원만히 합의(특약)했다라도, 법을 위반한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단가는 오직 '합의일 이후 발주(위탁)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Q. 즉시 현금 지불이 많던 용역 거래에서, 대금지급기일을 60일로 연장하거나 어음으로 지불하는 등 지불조건을 변경해도 됩니까?**

**A. 일방적인 지불조건 변경은 법 위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불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합리적인 대가 보상이나 계약 조건 조정 등 객관적인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04 Q&A

**Q. 발주 시점에 일부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내용을 공란으로 두고 "이유"와 "예정기일"을 기재하려 합니다. 얼마나 상세해야 하며, 예정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위법이 됩니까?**

A.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 기재 누락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미정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예: 원산지 스펙 미정, 발주처의 설계 미확정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정 기일" 역시 연·월·일 형태로 특정해야 합니다. 기재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기재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자동 위법이 되지는 않으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확정 서면을 교부해야 안전합니다.

**Q. 용역 거래(역무위탁)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받는 게 아니라서 '수령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아무 때나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A. 개념상 '수령거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이미 투입한 비용, 인력, 역무 제공 성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또는 부당한 급부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엄격히 처벌됩니다.

**Q. 매년 상·하반기 단위로 단가를 변경합니다. 협상이 길어져 반기 중반(예: 6월)에 합의가 되었지만, 수급사업자도 동의하여 당초 반기 초(4월 1일) 제공된 역무부터 신단가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호 합의가 있었으니 문제없습니까?**

A.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부당 감액)입니다.** 단가 합의일(6월) 이전에 이미 발주되어 수행된 4~5월 분 역무에 대해 인하된 신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이에 동의서나 합의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반기 초부터 신단가를 적용하고 싶다면, 반기 시작 전(발주 전)에 협상을 완료하고 단가를 확정해 두어야만 합니다.

### KEY POINT!

**합의 만능주의 금지:**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소급 단가 인하(감액)나 서면 미교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선(先)서면 후(後)착수:**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도 무조건 '실제 작업/용역 착수 전'에 전산이든 종이든 서면이 완전히 교부되어야 합니다.

## 04 Q&A

**Q. 수급사업자의 양해를 얻어 대금을 계좌 입금할 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해도 됩니까?**

**A. 사전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실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발주 전(계약 시)에 "송금 수수료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 감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Q.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갱신이 늦어질 경우, 서면 미발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작업 착수 전 서면 발급"을 원사업자의 강제 의무로 규정합니다.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서면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최소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잠정 합의 서면**이라도 먼저 발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의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가 바뀐 경우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까?**

**A. 단순 변경은 유지 가능하나, 실체 변경 시에는 재계약이 원칙입니다.**

- **업체명만 변경:**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 (단, 변경 확인 서류 구비 권장)
- **사업자번호 변경:** 포괄적 승계(합병, 분할 등)인 경우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만, 신규 법인 설립 후 자산 양수도 방식이라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달라지므로 거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Q.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어음 할인료만큼 대금에서 공제해도 됩니까?**

**A.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 감액입니다.** 하도급법상 현금 지급은 원칙이며, 현금 지급을 발미로 확정된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 명목의 금액을 깎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결제의 혜택'을 준다는 명분도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Q. 수급사업자의 시공 과실로 민원이 발생하여 비용이 예상되는 비용만큼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일단 대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여부만 판단하며, 원사업자의 '지급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민사적 다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무 대응:** 민원 보상비 등에 대해 양사가 **확정적 합의**를 하여 상계 처리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우선 대금을 지급(또는 공탁)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상계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저희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과 별개입니다. 발주처의 미지급은 원사업자의 경영 리스크일 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법정 기한)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 발생입니다.

## 04 Q&A

Q. 경영이 어려운 협력사를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 지도를 하려는데 문제가 됩니까?

A. '지도'를 넘어선 '간섭'은 위법입니다. 단순한 경영 효율화 조언은 가능하나, 인사권 개입, 거래처 제한, 기술 자료 요구 등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합니다. 자금 지원이 경영 간섭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Q. 급한 건이라 전화로 먼저 주문하고 나중에 주문서를 보내도 됩니까?

A.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법은 '착수 전' 발급을 규정합니다.

- 예외적 대응 :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라면 전화 직후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라도 발송 내역을 남기고 즉시 정식 서면을 발행해야 합니다. 빈번한 구두 발주는 공정위 조사 시 상시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KEY POINT!

“나중에 줄게”는 없습니다 : 모든 계약 조건은 **작업 시작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합의했으니 깎아도 되겠지”는 위험합니다 : 법정 할인료, 지연이자, 소급 감액 금지는 **강행규정**입니다.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

“발주처가 안 줘서”는 변명이 안 됩니다 : 원사업자의 결제 책임은 발주처 상황과 독립적 입니다.





II

# 공정거래법





## 0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 1. | 담합이란

2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 ※ 관련 조항

-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입찰담합)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정보교환 합의)**

### 2. | 규제 현황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집행의 제 1순위를 부여**

## 0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 3.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 ➔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특히,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

#### [연락의 입증방법]

우선, '의사의 연락'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카르텔 입찰 담합을 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진술 조서 외에, 카르텔 입찰 담합의 참가자 간에 작성된 협정서 및 회합 회의록 등이 있다.

#### ➔ '경쟁제한성'이 존재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 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①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
- ②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 4. | 합의 추정 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①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 |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 법 위반 유형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합성수지 건에서 대표규격 가격 → 나머지 규격은 대표규격에 연동)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2. |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 위반 유형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3.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 판단 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법 위반 유형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4. | 정보 교환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정보교환 합의는 크게 "시장"에 관한 정보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의사의 합치는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이를 "경쟁의 요소"라고 함)란 가격정보, 향후 생산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관해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만 있어도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 개념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 간에 시기적으로 임박한 상세한 가격인상 계획을 교환하고 실제로 그 교환된 정보에 부합하는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 또한 유통업자, 사업자단체, 시장조사기관, 언론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교환도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유형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 기업이 타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해 자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이른바 기밀정보 또는 민감정보(가격, 생산량, 비용 등)의 수집 및 교환(이하 '정보교환'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 경쟁법 위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를 일간지 등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한 정보교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공개된 공유정보라고 해도 해당 정보교환에 의해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쉬워졌는지 여부, 다른 공유정보가 아닌 정보와 조합했는지 여부의 사항의 평가에 따라서 공유정보라도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는 역사적 정보, 최근의 정보 및 장래의 정보로 구분하는데 역사적 정보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현재의 정보나 장래의 정보, 특히 기밀 정보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경우, 경쟁 타사가 해당 시장에서 채택할 시장 전략의 예측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 요건

#### (1) "정보"의 의미

- 정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게는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서 가격 인상계획안, 인상내역,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영업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며, 넓게는 기업의 기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 능력, 거래조건 등을 말한다.
- 판례는 '정보'의 의미를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시로 라면 회사들의 가격인상 계획 및 인상 내역, 유제품 사업자들의 시유 및 발효유 제품별 가격 인상안, 음료회사들의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신제품의 가격, 영업전략정보, 가격 인상안을 들고 있다.
-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능력, 거래조건 등을 정보의 예시로 들고 있다.

#### (2) 교환(주고받음으로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 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 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기업이 제3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3자 기관은 정보를 집약하고 축적하여 기업에 사전에 합의한 형식과 빈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①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각 구성사업자별 재고량, 판매량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봄
- ②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다만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이 접근 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전문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표 또는 공개하는 것 주의할 것은 사업자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행된 비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정보교환의 합의

-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한다.
- 단순 외형 일치(정보교환의 존재)를 즉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 ① 의사연결의 상호성,
  - ② 정보교환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판례).

다만, 정보교환 자체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논란이 있으며, 법원이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정보교환 담합 합의 추정'과 같은 사실상의 추정 등을 인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 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 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한 경우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 정보교환을 근거로 합의 추정

#### (1) 합의 추정의 의미와 요건

- 정보교환을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합의추정'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 [합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례]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정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2) 외형상 일치 판단 기준

-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예 :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10개 보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 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3)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 기준

-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②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정보의 교환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 ③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 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 [필요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필요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 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 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뤄진 경우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의 외 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 정보인 경우)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4) 업무상 유의사항

#### [Do's]

-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언급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기록해 놓아야 함).
- 내부보고 생성시 담합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접촉경위나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가격이나 공급량의 결정이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내부자료를 축적 보관하여야 한다.

#### [Don't:s]

-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 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 전자우편, 즉 이메일의 쌍방향적 성격을 감안하여 경쟁사 임직원과는 가급적 이메일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교환하여야 한다면 내용에 민감한 문구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5. | 입찰 담합

#### → 개념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 담합은 공공 및 민수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가 사전에 수주 예정자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발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 관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입찰 제도의 실질을 잃게 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 입찰 담합의 방법

-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수주 예정자를 결정
- 점수제나 순서제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
- 지명업자간의 화합의 모임을 통해 지명업자로부터 수주 희망의 유무를 듣고 토론 등으로 원만하게 낙찰예정자로 결정
- 발주처 직원으로부터 낙찰예정자가 된 취지의 연락을 받은 업자를 낙찰예정자로 확정.
-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여 둘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둘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하여 투찰

#### → 입찰 담합의 유형

아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찰 담합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입찰 담합이 우려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 (1) 입찰가격 담합

-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 된다.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타당한 가격 수준을 위한 것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①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 사업자가 공동으로(합의하여) 낙찰가격 또는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

### ② 가구제조업분야의 입찰가격 담합 사례

- ✓ (입찰가격 등 합의)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게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

##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예정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인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①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

#### (a)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수주 예정자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및 공통의 의사의 형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위반의 우려가 강함.

#### ㉠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 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

####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가 공동으로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자에 게 제공하는 것

#### (b)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 수주 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는 것

#### (c) 기타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전제로 하여 그 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다.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 다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에게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시키는 것

: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는 제조위탁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는 동시에, 수주 예정자의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제조위탁을 받은받은 자가 수주를 희망하고 있었던 수주 예정자 이외의 사업자 또는 일정 기간 수주의 실적 없는 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의 일부를 제조시키고 있었던 경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지명견적으로 발주하는 제조위탁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 및 수주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해당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자 이익을 거의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예정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배분 방법 및 배분액수를 결정하고 있었던 경우

### ㉡ 수주 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 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 ②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것

✓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 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a) 공동기업체(컨소시엄)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체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정보교환은, 수주 예정자 결정을 위한 정보교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수주 예정자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됨.

### ③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것

✓ 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 의욕 등의 설명

: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 이전의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체와 연락·조정 등이 없이, 자기의 입찰 참가에의 의욕, 기술 정보(유사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등을 발주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함.

#### (a) 자기 판단에 의한 입찰 사퇴

: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조정을 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요청 등을 받을 일 없이 자기의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입찰을 사퇴하는 것을 말함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④ 가구제조업 분야의 낙찰예정자 담합 사례

- ✓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예: 건본주택 건립업체)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

###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4) 수주 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수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6) 정보교환 등

- 정보교환행위란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 간에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빌트인 특판가구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에게 자사의 준 투찰가격과 세부원가 등을 제공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인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 입찰담합 시 제재

#### (1)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 (2)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3조).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

#### (3)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6.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제재

### ➔ 행정적 제재

-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 ➔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 양벌규정(공정거래법 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6조)

####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공정거래법 제111조)]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항)
-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항)

### [업무상 유의사항]

- 제출대상이 '문서'에서 '자료'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가 전자문서, 동영상, 사진, 도면 기타 전자적 형태의 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됨
  -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 등에 저장된 다양한 자료(영업비밀 포함)의 유출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의 증거수집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종전보다 손해배상액도 확대될 가능성 있음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 부당한 내부거래 개요

-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종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통행세 관행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 및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 유용 등의 규제 필요성, 실제 지원을 본 지원객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의해 공정거래법 개정(2013. 8. 13.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 2014. 2. 14. 시행)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당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47조)가 동시에 적용된다.

☑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비교표]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모든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지원객체	1. 특수관계인 2. 계열회사 (공정위 실무상 해외 계열사는 제외) 3. 자회사 (지분을 100%의 완전자회사도 포함)	1. 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 (상장여부와 무관)을 보유한 계열회사 3.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 (50% 초과 지분 보유)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구성 요건	지원행위+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부당성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 존재)	행위당사자+부당이익제공
규제내용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 ->사업포기의 경우 규제 어려움 3.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예외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1. 상당히 유리한 조건 (안전지대 규정 존재) 2.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 3.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포기도 규제 가능 4.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당한 거래절차 부재 (안전지대 규정)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입증 곤란한 경우에도 규제 가능하며, 예외사유(효율성, 보안성, 긴급성)관련 명시적 규정 존재
위반시 제재	1) 지원주체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등 재발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지원금액x부과기준율)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 이내 과징금 부과 √ 지원금액: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80%, 50%, 20% 부과기준율 적용 - 실행행위를 한 자, 지시한 자, 관여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 지원객체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지원주체와 동일) - 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경우, 부당지원행위는 제외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원 객체는 형사적 제재 대상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2. |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 ➔ 개념

- 지원을 하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특수관계인 등)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을 받는 회사간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 특수관계가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추정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지원 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한 회사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한다.
-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경우, 지원하는 회사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고 계열사는 일종의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받는 경우인데, 지원을 받는 계열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직거래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인지 판단하게 된다.

##### ➔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 부당성: 공정한 거래 저해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안전지대) 대규모로 거래하여 거래 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 지원금액의 상당성(정상가격과 지원금액의 차이)의 판단 기준]

- 지원금액의 상당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 ✓ **당해 거래의 정상가격과 지원금액**(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의 차감한 금액, 만일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차이,
  - ✓ **지원금액의 정도**
-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달해야 상당성이 충족되는지는 일의적으로 제시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당해 거래에 관한 제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2009두11911)
- 법원 및 공정위는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의 상대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저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10~20% 사이에는 유동적임, 유의할 것은 상대적 비율이 10% 미만인 사례에는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았음

#### ➔ 유형 ① 자금지원행위

##### (1) 판단기준

- '정상금리' 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 정상금리는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하며,
  - ✓ 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말한다.
- (안전지대) 적용금리와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인면서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

##### (2) 위반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 유형 ②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지원행위

##### (1) 판단기준

-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 거래시 비계열사와 거래시 정상가격(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차이를 7% 미만으로 조정
- √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계열사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함.
-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 √ 정상가격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정상가격(시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부당한 지원행위심사지침).
- (안전지대) 해당 거래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2) 위반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돈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 ➔ 유형 ③ 부동산 임차

##### (1) 판단기준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안전지대) 실제 임대료·임차료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2) 위반유형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유형 ④ 상품 및 용역 지원행위

### (1) 판단기준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안전지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2) 위반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 유형 ⑤ 인력지원행위

##### (1) 판단기준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부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한다.
- (안전지대)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2) 위반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계열사 등에 인력을 제공한(파견 등) 후 파견인건비를 계열사에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 미회수 시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 유형 ⑥ 물량 몰아주기

##### (1) 개념

-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 (안전지대)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3) 위반유형

-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 규모로 제공으로써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 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 유형 ⑦ 통행세(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반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3.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 → 개요

#### (1)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총수 및 친족으로 한정), 동일이니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음)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제47조).
-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지분만 계산한다. 특히 동법 제45조와 달리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지원주체·지원객체 판단은 해당 이익 제공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며, 차명보유,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 지분으로 본다.
- √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가능하다.

#### [ 공시대상 기업집단]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 집단 지정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이 기업집단에 한정함)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 √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말하며,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에 한정한다.

####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017두63993 판결 등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정위 지침 변경)

#### ☑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유형	내용
<p><b>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b> (제1호, 제3호)</p>	<p>정상가격보다 <b>상당히 유리한 조건</b>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현금 기타 금융 상품 거래</p> <p>※ 적용 제외</p> <p>① <b>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b>이고,                  ②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b>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b> 미만인 경우</p>
<p><b>사업기회 제공(제2호)</b></p>	<p>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b>이익성</b>)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b>밀접성</b>)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p> <p>※ 적용 제외</p> <p>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사업기회 제공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p>
<p><b>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의 거래(제4호)</b></p>	<p>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거래 특성상 통상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b>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b></p> <p>※ 적용 제외</p> <p>① 거래당사자간 <b>상품·용역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b>이고,                  ②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년도 <b>평균매출의 12% 미만</b>인 경우                  ③ <b>효율성이나,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거래</b></p>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 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

#####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적용 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사이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3) 위반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경우
- 기업 어음 고가 매입
- 회사채 고가 매입
- 주식 고가 매입
-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고가 매입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 내용 ② 사업기회의 제공

####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행위 유형은 외형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될 수 있는 제공주체 측면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사업기회의 의미

- 제공주체 측면에서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익성)이 될 사업기회를 말하며, 제공주체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면 충분하고 제공객체에게 그 이익이 이전될 필요는 없다.
- 상법 제397조의2에 정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하지만, 동법에서는 위반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 위반 유형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포함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
  - √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 수행할 사업
  - √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 √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인지,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4) 적용 제외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당해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 내용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대상 특성상 지원객체(총수일가)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회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 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

#####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 (a)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회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b)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c)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회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d)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e)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a)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b)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a)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b) 따라서 경기 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c)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공여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정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4) 합리적 고려, 비교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예외 사항]

다만,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됨

#### 4. | 업무 시 유의 사항

##### ➔ 계열사 선정 시

- **계열회사와 비계열사와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의 비교**
  -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비교·검토
  - ✓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신용평가표, 업무실적, 가격비교자료 등)를 구비·보관
- **통행세 해당여부 검토(특히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의)**
  -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 관련 증빙자료 구비
  - ✓ 계열사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직거래시) 당사는 더 싸게 상품·용역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확인
  - ✓ 계열사의 매개 전후의 거래관계 변동 확인
  - ✓ 비계열사에는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 **안전지대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검토 필요**

##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정상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

- '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자 간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 Ⅱ.5.Ⅲ.2.}
- 해당거래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면 유사한 사례를 통해 정상가격 산정
  - ① 해당거래와 유사한 사례 선정
  - ② 유사 사례와 해당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차이 등이 존재 하는지 확인
  - ③ 거래조건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 산정
- 유사한 사례도 없다면 통상의 거래당사자가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경영 사정하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되, 다음 법령에서 고려하는 방법을 참고 할 수 있음(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산정 방법을 걸친 것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
-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음(2014두36112판결), '정상가격'이 이러한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있음.

### ➔ 가격 선정 시

- 비계열사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 ✓ 비계열사와의 가격비교자료, 감정평가자료 등 정상 가격에 관한 검토자료를 구비·보관 하여야 한다.
-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 기타 거래조건 설정 시

- 계약방식 및 내용에 대한 자체 검토 필요
- 회계법인, 감정평가 등 제3자를 통한 계약 조건 검토
- 거래조건을 비계열사와 거래 시 설정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거래조건 협상과 관련한 근거자료(회의록, 전자메일 등)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 04 Q&A

**Q. 적자인 계열회사를 돕기 위해,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사를 거래 중간 단계에 포함시켜 마진을 챙겨주려 합니다. 문제가 됩니까?**

**A. 명백한 법 위반(부당지원행위)입니다.** 이를 흔히 '통행세 지원'이라고 합니다.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창고 보관, 가공, 배송 등)이 없는 계열사를 끼워 넣어 과다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군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거래 단계의 불필요성이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과징금 및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상 해지 사유는 없지만, 회사 정책 변경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우리 회사와의 거래에 의존도가 높다면,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 3~6개월 전에는 공식적인 서면 통보**를 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비계열사가 견적을 더 낮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받나요?**

**A. '합리적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가격 외에 품질, 납기 준수율, 기술력, 보안성 등에서 계열사가 월등히 유리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비교 평가표 등)가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비슷함에도 가격이 비싼 계열사를 선택했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취급**' 또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 결정 과정의 근거 자료를 반드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Q.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게 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 실무적으로 다음의 4가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① **강제 할당:** 주문하지도 않은 재고를 일방적으로 송부하고 반품을 막는 행위
- ② **업종 무관 제품 판매:** 대리점 영업과 상관없는 생수, 명절 선물세트 등을 강매하는 행위
- ③ **신제품 밀어내기:**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을 대리점 의사와 관계없이 대량 공급하는 행위
- ④ **불필요한 비용 전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굳이 원사업자를 통해 비싼 운송비까지 내며 사게 하는 경우

**Q. 대리점 계약서에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제한의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허용:** 단순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 지역을 주된 타깃으로 하라"는 정도의 판매책임지역제(Primary Area of Responsibility)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타 지역 판매를 막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금지:** 타 지역 판매 시 페널티를 주거나, 타 지역 대리점의 고객을 뺏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로서 위법 소지가 큼니다.

## 04 Q&A

**Q. 지정된 판매지역을 벗어나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도 됩니까?**

**A. 매우 위험한 조항입니다.**

지역 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수반한다면, 이는 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이런 규정을 두면 경쟁 제한 효과가 커서 법 위반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Q. 우리 회사의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전용 대리점'에 자사 제품만 팔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사 상호를 부착하고 본사로부터 간판 설치비나 인테리어 지원 등을 받는 전용 대리점(Exclusive Outlet)의 경우, 브랜드 정체성 유지와 효율적 영업을 위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KEY POINT!

**통행세 주의 :** "그 회사가 그 거래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계열사는 빼야 합니다.

**구매 근거 남기기:**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교 견적서와 업체 선정 사유서**를 구비하십시오.

**대리점 자율성 존중:** 판매 지역이나 취급 품목을 강제할 때는 그것이 브랜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지, 아니면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약관법





## 01 약관법의 적용 범위

### 1. | 약관법이란

약관법은 공정거래법규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임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2. | 약관 규제의 취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 규제가 필요함

### 3. | 약관법상 약관의 정의(법 제 2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이 되는 것

#### ➔ 약관의 요건

-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이 다수이어야 함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01 약관법의 적용 범위

### → 약관의 종류(판매)

- 판매점 지정 계약서
- 수출제품 매매 기본 계약서
- 제품 공급(매매)계약서
- 수출해송 일반약관
- 운송계약 경쟁입찰 약관
- 운송하역 일반계약규정
- 내수 재고품(주문품) 약관 등

### → 약관의 종류(구매)

- 설비 및 기기 구매 일반약관
-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반약관
- 인터넷 구매시스템 이용약관
- 설비구매/시설공사/인터넷 구매 입찰 유의서
- 원료구매 일반약관
- 협력작업 계약 일반약관 등

### → 약관의 종류(기타)

- 물품 매각 계약 일반약관 등

## 02 약관법의 특성

### 1. |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법 제 3조)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고객 요구 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 2. | 개별약정의 우선(법 제 4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함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보다는 개별약정이 더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3. | 약관의 해석(법 제 5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 4. |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법 제 16조)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외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임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1. |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 원칙(법 제 6조)

➔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 조항
  - ①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②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약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업자 일방이 정하는 조항
- 불평등한 위약금 조항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소송 발생 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재산권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전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

##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 2. | 면책 조항의 원칙(법 제 7조)

####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주차장 내 도난,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탁송수하물 운송약관
-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의 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 규정
- 야구경기장에서 연습공이나 파울볼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중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최 측이 현장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장 관람약관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 매매약관
- 물품 매매에 있어 하자 담보책임을 보증기간 내의 부품상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에 한한다는 자동차 판매약관
-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 계약
- 담보책임은 상품을 수수한 후 8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에는 고려되지 아니 한다는 매매약관

##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 3. |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법 제 8조)

#### →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조항은 무효임
- ①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 배상, 위약벌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② '부당하게 과중한' 을 판단함에 있어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예정하는 조항
- 토지분양 계약의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예정하는 조항
-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 규정하고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는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 4. |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 9조)

####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② '부당하게 과중한'을 판단함에 있어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③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⑤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최고(독촉)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

- ①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실효 약관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채권관계(예. 전기·가스 공급 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반면 부당하게 단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함

#### 5. | 채무의 이행(법제 10조)

##### ➔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

-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급부(계약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는 아파트 분양 계약 조항
- 계약 후 차량 인도 시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자동차 판매 약관 조항
- "운송인은 통보 없이도 운송인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는 운송약관 조항
-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키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 6. |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 11조)

#####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③ 고객이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득을 사업자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
  - ① 항변권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② 상계권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 ③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④ 선택권 : 여러 형태의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권리
- '기한의 이익'이란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양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물품대금 납부 약정일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이전에는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임
- 약관으로 정하는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기간·구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무효임

#### 7. | 의사표시의 의지(법 제 12조)

#####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의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간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약관의 변경 시에는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함
- 의사표시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 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무효임
-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의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효임

#### 8. | 소송 제기의 금지 등(법 제 14조)

##### → 소송 제기의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에 관한 사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의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임
- 재판관할에 대하여 법류에서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입증 책임의 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임



IV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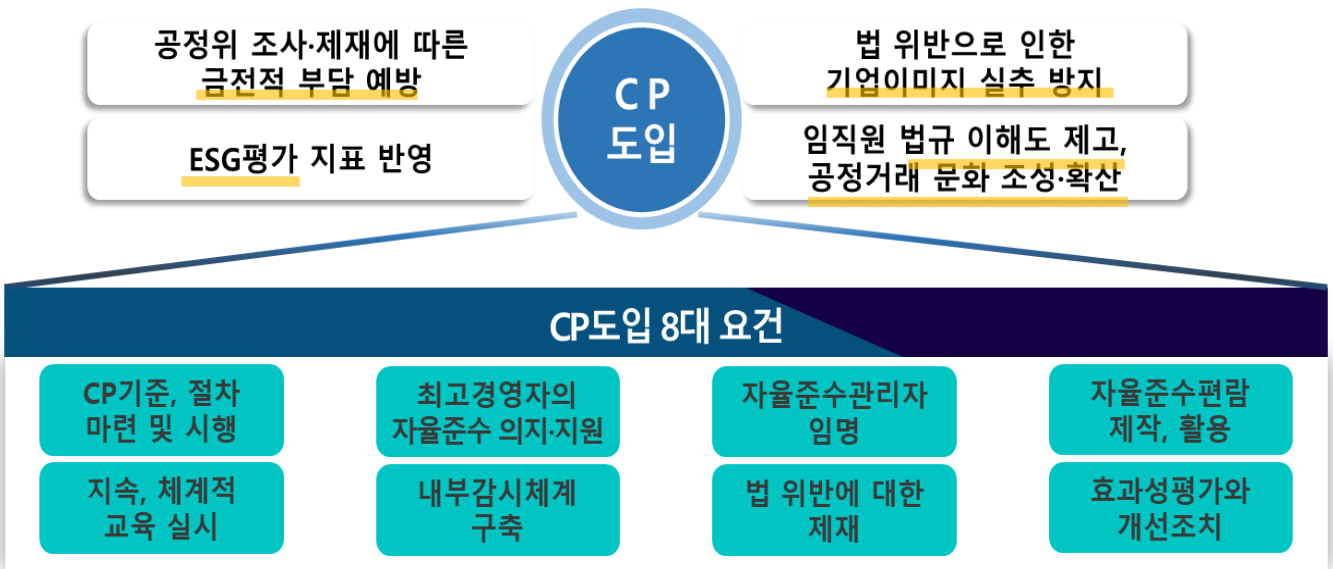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 CP의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2. |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 CP도입의 중요성

-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 법 위반 사실 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 이미지 실추 예방
- ESG평가 지표 반영 : 공정거래 CP 적극 활용으로 ESG경영 강화
-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확산 : 임직원 스스로 법 위반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인식 향상

##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 ➔ CP도입 8대 요건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 적극 지원

#### 3. CP담당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자율준수관리자 책임하 공정거래 관련 법규, CP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 5. 지속, 체계적 교육 실시

- CP기준과 절차,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효과적, 정기적인 교육 실시

####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 7.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고,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효과적 CP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CP기준, 절차 운용 등의 점검 평가와 개선조치 실시

02 CP등급평가

1. |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 CP등급평가란

- CP 8대 도입 요건을 갖추고, CP를 운영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 CP등급평가 목적

- CP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실한 CP운영을 유도 및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목적

2.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법제화

**공정거래법 제 120조의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상세내용

CP평가등급	과징금감경	직권조사면제	시정명령 공표
최우수(AAA)	15%	2년	공표크기 및 매체수 2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우수(AA)	10%	1년 6개월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비교적 우수(A)			-

※ 비교적 우수(A)보다 하위 점수는 등급 미부여

03 포스코와이드 CP추진경과

1. | CP추진 경과

회사는 2008년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욱 투명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8 ~ 現

- '08.08 CP도입 선언, 운영지침 제정
- '08.12 자율준수관리자(이상필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1차)
- '09.08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2차) \* 하도급법 개정 내용 추가
- '10.03 CP전담부서(정도경영팀) 신설, 자율준수관리자(김진욱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 '10.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1.10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4차) \* 공정거래 구매·판매부문 사례집
- '11.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5차) \* 하도급 부문 보충
- '12.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3.03 자율준수관리자(안윤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4.07 포스코그룹 통합 자율준수편람 발간 \* 집필진 회사로 참여('12, '14년 총 2회 참여)
- '16.03 자율준수관리자(김주현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8.03 자율준수관리자(이상걸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9.01 수의계약 사전감사제도 도입
- '21.03 자율준수관리자(강윤평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22.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6차)
- '23.08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분쟁조정기구) 신설
- '23.12 CP등급평가 우수(AA) 획득 \* 대기업 기준
- '24.03 자율준수관리자(황경호 정도경영실장) 이사회 선임
- '24.03 포스코그룹 CP활성화 TF 참여('24.03 ~ 11) \* 그룹사 SNNC 지원
- '24.10 CP운영지침 개정(자율준수관리자 직무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CP업무 구체화)
- '24.10 회사 홈페이지 내 공정거래 분야 개선
- '25.01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7차)
- '25.04 자율준수관리자(안병도 상무보) 이사회 선임
- '25.12 CP등급평가 비교적 우수(A) 획득 \* 대기업 기준
- '26.03 자율준수관리자(이평수 상부보) 이사회 선임
- '26.05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8차) \* 개정 내용 추가 및 보충

POSCO

포스코와이드

[www.poscowide.com](http://www.poscowide.com)